행글라이딩 분과위원회 규정

【항공회 규정 제1-17호】

제정 2017년 5월 24일
개정 2018년 6월 1일

제1장 총 칙

제 1조【설치근거 및 명칭】

(사)대한민국항공회(이하 "항공회" 라 한다) 정관 제33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, 제34조(위원회) 제2항 및 3항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그 명칭은 대한민국항공회 행글라이딩분과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Hang-gliding Commission(약칭 : KHC)라 칭한다.

제 2조 【소재지】

위원회의 사무소는 별도로 둘 수 있다.

제2장 목적 및 사업

제 3조【목적】

위원회는 국내 행글라이딩 진흥을 도모하며, 국제 행글라이더 기관과 스포츠교류를 통한 친선도모 및 국위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【사업】

위원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행글라이딩 종목에 대한 홍보,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업무
2. 행글라이딩 종목에 대한 경기력향상에 관한 업무
3. 회원에 대한 안전지도 및 교육
4. 행글라이딩 종목의 교육과정 수립 및 검토
5. 행글라이딩 종목에 대한 대회 계획 수립 및 집행
6. 항공회의 승인을 받아 CIVL에 대한 한국대표자를 선임 통보
7.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8. 선수 및 심판들의 권익의 보호, 증진
9. 민간자격증 검정업무을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

제3장 조직 및 인원

제 5조 【조직의 구성】

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10명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 이내로 구성한다. 필요시 사무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 6조 【선출방법】

위원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제 7조 【임기】

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항공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8조 【위원의 해촉】

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일신상의 문제로 출석이 곤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제 9조 【위원의 직무】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제4장 위원회 운영

제 10조 【기능】

위원회는 다음 의안을 심의 · 의결하고, 항공회 회장의 승인을 얻는다.

1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
2. 사업예산 수립 및 결산
3.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

제 11조 【위원회의 소집】

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열리며 최소 3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2조 【긴급한 업무처리】

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 13조 【제척 및 기피】

위원은 본인,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 14조 【재정 조달】

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다음과 같이 조달한다.

① 제 4조의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

② 사무처와 협의하여 수립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

③ 각종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

제 15조 【의결 정족수】

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장 재 정

제 16조 【재정】

위원회의 재정은 위원회가 계획 수입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것을 근거로 집행하며 사무처를 통해 정산 및 회계에 산입한다.

제7장 보 칙

제 17조 【시행세칙 설치】

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제 규칙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며, 분과위 운영기간을 항공회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부 칙

제 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